

연구 자료

미국의 1996 농업법

최정섭* 권오상**

1. 입법의 배경
 2. 1996 농업법의 주요내용
 3. 미국 및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함축성
- 부록: 1990 농업법과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대비

1. 입법의 배경

UR이 국제적으로 농업에 대한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감축이라는 성과를 거둔 이후에 제정된 1996 미국농업법은 다른 때의 농업법에 비해서 훨씬 큰 정책전환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그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농업정책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1996 농업법의 입법 배경, 주요 내용 및 그 함축성을 소개함으로써 향후의 심층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미국농업정책의 기본과제는 과잉공급 기초 하에서 농민의 소득을 일정 수준 (예를 들면 도농간 균형소득 또는 패리티) 이상으

로 유지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공급 측면에서 해결하는 두 가지 전통적인 수단은 휴경과 수출이다. 미국은 UR 협상을 주도하면서 재정부담이 큰 휴경보다는 수출을 정책기조로 확립하였다.

1991년부터 5년간 미국 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루던 1990 농업법의 시효가 1995년에 만료되었다. 농업법 제정권한을 가진 미국의회는 농업법 개정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의 토론과 청문회를 거쳐 1996년 4월 4일 「1996년 연방농업개선 및 개혁법」을 공포하였다. 1996 농업법은 UR 타결과 재정악화 등 미국의 국내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한 가운데 성안된 것이 특징이다.

1996 농업법의 제정을 위하여 미국 농무장관은 1995년 4월 2주일에 걸쳐 지방을 순회하며 여론을 수렴하고, 5월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오와에서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농무장관 경제특별보좌관실에서는 백악관 등 기타 행정부내 관련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1995년 농업법 행정부 지침(Blue Book)」을 발간하였다.

* 부연구위원

** 책임연구위원

이 지침에서 제시된 1996 농업법에 대한 행정부의 8대 원칙은 다음과 같은데 이러한 원칙들은 후술하는 농업법 내용에서 거의 관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농민소득지지의 지속과 생산자의 시장 원리 적응력 제고

② 농촌개발프로그램을 통한 농촌기반투자 지속 및 정보화·인적자본 투자 확충

③ 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④ 현행 수출촉진 프로그램의 유지·개선을 통한 농산물수출의 증대

⑤ 생산자의 시장경쟁력 제고

⑥ 국내식량원조 프로그램의 효율화

⑦ 소비자에 대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

⑧ 연구분야 투자수준의 유지

1996 농업법 입법은 미국내 농업경제의 호전, 예산제약 심화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농촌경제에서 농업의 상대적 중요성 저하

②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농업생산 집중

③ 농민의 경제사정 호전

④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정치적 압력

1996 농업법은 품목별 프로그램을 전폐 하자는 극단적인 시안과는 거리가 멀지만, 납세자와 소비자의 농업지지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약화와 재정적자 축소 분위기를 반영하여 성안되었다.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중장기적 정책전환을 도모하고 경작 자율성 제고와 환경관련 규정강화 등이 반영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1996 농업법의 시한인 2002년 이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정을 주정부 또는 생산자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이는 농산물 유통이 전국화 내지 국제화되는 추세 아래 농민지지와 관련된 정책이 연방으로부터 주정부 또는 여타기관으로 옮겨지기 어렵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상하원은 별도의 토론과 청문을 거쳐 농업법안을 각각 확정하고 단일안으로 만든 후, 1996년 3월 29일에 상원 (74대 26)과 하원 (318대 89)에서 의결하였다. 그 후 4월 4일 클린턴대통령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법률(PL 104-127)로써 확정되었다.

표 1 미국 농가경제 총량지표 현황, 1988~1995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총소득 (10억달러)	53.9	54.2	55.1	53.2	57.4	58.5	51.0	49-53
정부직접지불 (10억달러)	14.5	10.9	9.3	8.2	9.2	13.4	7.8	8-10
호당 평균농가소득 (1,000달러)	33.0	32.0	39.0	37.4	42.9	38.3	39.2	39-41.8
농가소득원(%)								
농업	12.8	18.1	14.6	15.6	16.8	13.3	12.5	11.8
비농업	87.2	81.9	85.4	84.4	83.2	86.3	87.5	88.2

* 1994년은 잠정치, 1995년은 예측치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청

2. 1996 농업법의 주요내용

이번 미국 농업법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목표가격과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부족분 지불제 (不足拂: Deficiency Payment)를 철폐하고 생산자율계약 (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에 의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한 데에 있다.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면화, 쌀 등 1990 농업법 하의 정책품목을 대상으로 한 생산자율계약금은 일정면적에 대한 휴경 의무를 면제하고 토양보전을 위한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농지에는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채류만을 제외한 아무 작목이나 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곡물담보융자제 (Non-recourse loan)는 존속시키되, 융자가격은 1995년 수준에 동결시켰다. 그동안 소득지지 기준으로서 기능하던 목표가격을 없앴으로써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생산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반면, 하한가격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담보융자제는 유지시킨 것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은 UR 협정에 의한 약속인 6년간 36퍼센트 감축시키되, 수출촉진

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1996 농업법에서도 대부분 그 골격이 유지되었다. 덧붙여 농무장관에게는 다른 WTO 회원국의 협정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례를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환경농업 관련 규정은 상당부분 보강되었다. 환경개선장려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경종과 축산농가의 환경보전형 농업발전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종전의 환경농업관련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이 재승인되었다.

2.1. 농산물시장전환법 (Agricultural Market Transition Act)

이 부분은 생산자율계약, 품목별 비상환용자, 기타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생산자율계약 대상농지는 1990 농업법 하에서 최소한 1번 이상 휴경보상 프로그램(ARP)에 참여하였거나 1985 농업법에 의한 보전유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계약이 만료된 농지이다.

계약에 의한 농가 작목별 보상금은 기준물량(계약면적의 85%×기준단수)에 작목별 지급단가를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작목별 지급단가는 해당 품목의 연간 예산액을 프로그램 참여농가에 대한 기준물량 합계로 나눈 것이다.

표 2 1996 농업법의 구성

구 분	제 목
제1장	농산물시장전환법 (Agricultural Market Transition Act)
제2장	농산물 무역 (Agricultural Trade)
제3장	보전 (Conservation)
제4장	영양지원 (Nutrition Assistance)
제5장	농업촉진 (Agricultural Promotion)
제6장	신용 (Credit)
제7장	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제8장	연구, 지도 및 교육 (Research, Extension, and Education)
제9장	기타 (Miscellaneous)

생산자율계약에 의한 회계 연도별 예산한도액과 품목별 예산배분 비율은 1996 농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예산한도액은 1998 회계연도까지 약간 증가한 후 2002년까지 가파르게 감소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비상환음자 대상품목은 상기 생산자율계약 농지생산물 이외에 면화(Extral Long Staple Cotton)와 유지작물을 포함한다. 융자조건은 1985 농업법의 경지보전 및 9개월이며 만기시 융자가격에 이자를 더한 금액 또는 농무장관이 정하는 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에 상환하거나 담보를 포기함으로써 상환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기타 사항으로는 농업법 시행 만료시 1949년 농업법에 의거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도록 한 규정을 유지한 것과 시장전환계약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21세기 농업생산위원회(Commission on 21st Century Production Agriculture)」를 설치키로 한 것이 있다.

2.2. 농산물 무역(Agricultural Trade)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신용보증, 시장개척 프로그램(MPP), 수출진흥정책(EEP), 해외시장개척정책(FMDCP) 등 기존 1990 농업법에 의한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시장개척 프로그램은 시장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수출지원의 주안점이 중·고부가가치 농산물이라는 점은 과거와 같다. 이는 프로그램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다. UR 협정이행에 의해 감축대상인 수출진흥정책(EEP) 지출상한은 2000년에

약 6억달러로서 UR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준수하도록 설정되었다.

PL480 제1장에 의한 협정상대는 외국의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조직도 포함시켰고, 대상품목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신축성을 제고시켰다. 동법은 또한 미국정부의 농산물 금수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 피해를 보상할 길을 열어 두었다.

2.3. 보전(Conservation)

환경농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서 보전유보 프로그램(CRP)과 습지보존 프로그램(WRP)은 계속 유지하고,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EQIP)과 환경보전시범사업 프로그램(Conservation Farm Option Pilot Program)을 신설하였다.

CRP와 WRP는 각각 현재의 면적상한인 3,640만에이커와 97만5천에이커를 유지하고, EQIP 기금은 1996 회계연도에 1억3천만달러, 1997-2002년 기간중 매년 2억달러씩 총 13억3천만달러를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금의 절반을 축산업과 관련된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였다.

2.4. 기타

농업법의 나머지 부분은 영양보조, 농가를 상대로 한 융자, 농촌개발, 연구·지도·교육, 농산물검역·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농촌진흥프로그램(Rural Community Advancement Program), 미국농촌기금(Fund for Rural America), 농업연구지도교육경제자문위원회(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Extension, Education, and Economics Advisory Board), 농업연구기구종합계획 작업반 등이 신설되었다.

3. 미국 및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함축성

1996 농업법은 “시장지향적 농정”과 “환경농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1973년부터의 관행인 의회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 또는 용자가격과의 차액을 납세자의 부담으로 보충하던 부족분지불 방식은 새로운 제도로 바뀌었다. 생산자율계약은 예산한도액을 프로그램 참여 농가에게 생산량에 의해 나누어 주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작의사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서 생산자쪽으로 돌아온 것이다.

새로운 제도하에서 농민은 시장의 신호에 의해서 기대가격을 형성하고 작물별 식부면적을 결정하게 된다. 선물(先物)시장에의 의

존도가 더욱 높아지겠지만 전반적인 공급측면 불안정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 농업정책의 변화를 농업보호의 포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대답은 “결코 아니다”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최근 특히 작년부터의 국제곡물가격 급등은 목표가격에 의한 부족분지불총액을 급감시켰다(표 3 참조). 곡물가격의 추가인상이 있다면 부족분지급액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미국 정부가 1996 농업법을 통하여 선택한 것은 농민소득지지 총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정부의 통제를 통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이다.

정책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부과되던 휴경의무가 삭제됨으로써 미국의 전반적인 농산물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대규모 농가에 의해서 주도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생산분을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이 필수적으로 증가해야 하며, 수출지원 프로그램들은 1996 농업법에서 더욱 정비되거나 신설되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표 3 경작자율계약 보상금추정액과 부족분지불액 비교, 1987~2002

단위: 십억달러

부족분지불액		경작자율계약보상금(추정)	
회 계 연 도	금 액	회 계 연 도	금 액
1989	5.8	1996	5.6
1990	4.2	1997	5.4
1991	6.2	1998	5.8
1992	5.5	1999	5.6
1993	8.6	2000	5.1
1994	4.4	2001	4.1
1995	3.9	2002	4.0
소계	38.6	소계	35.6
연평균	5.51	연평균	5.09

자료: USDA-ERS, Agricultural Outlook Supplement, 1996. 4.

1996 농업법 제정 및 시행은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이는 국제시장 여건을 변화시키는 간접 경로와 농산물 통상협상을 통한 직접 경로를 통해서 우리 농업정책을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 첫째, 국제시장의 불안정성이 제고되는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의 농산물시장 추가개방 압력에 대응하여야 한다. 셋째, UR 협정을 이행하고 환경농업을 발전시키면서도 농가소득을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과거의 가격주의- 즉, 가격지지에 의한 소득지지에서 벗어나 다음해의 생산과 연결되지 않는 (생산중립적인) 소득지지와 환경농업의 정책화가 그것이다.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에서 이러한 대전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논리인 “식량의 안정적 확보 -식량안보”를 “시장” 및 “환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6.5. 「UR 이후 미국의 농업 및 무역정책 변화」, 조사연구보고 96-4.
- 김명환. 1996. 5. 9. “미국 Farm Program의 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회 자료 (mimeo).
- 최정섭. 1994. “미국의 농업정책,” 김동희외 공저, 「국제화시대의 농업정책」, 한울경제아카데미, pp 413-441.
- 한두봉. 1991. 3. “1990년 미국의 농업법과 농업정책,” 「농촌경제」 14(1).
- Glickman, D., April 1996. “Agricultural Policy for a New Century,” *Agricultural Outlook*, USDA-ERS.
- The Economist, “Farm Reform: the Wheat and the Chaff,” March 9, 1996.
- U.S. Government. 1996. *Congresional Record: Proceedings and Debates of the 104th Congress*, Second Session, Vol. 142, No. 26, Washington, February 29.
- Young E. and D. A. Shields. April 1996. “Provisions of the 1996 Farm Bill - the 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and Reform (FAIR) Act,” *Agricultural Outlook Special Supplement*, USDA-ERS.

부록: 1990농업법과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대비*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제I장 농산물시장전환 법	소득지지는 농가판매가격 및 작물별 식부 요건에 의해 결정. 농민의 식부자율성은 제고되었으나 보상면적은 감소. 비상환용 자는 지속. 마케팅론은 면화, 쌀, 유지작 물에 대해서는 의무화, 소맥, 사료곡물, 꿀에 대해서는 실시가능.	소득지지는 농가판매가격과는 무관. 의회 예산국 (CBO)의 1990 농업법 지속가정에 의한 1995년 2월 지지수준에 기초. 식부 면적 및 작목선택 제한은 대폭 감축. 비상 환용자 및 마케팅론은 용자가격 상한조건하 에 존속.
소득지지 -소맥, 사료곡 물, 면화, 쌀-	소득지지는 평균농가판매 가격이 목표가 격보다 낮을 때 부족분 지불을 통하여 제 공됨. 부족분 지불액은 지급률에 기준단 수와 기준면적을 곱하여 계산. 작목별 지 급률은 목표가격과 일정기간의 시장가격 또는 용자가격 중 높은 가격의 차액임. 목표가격은 품목별로 동결: 소맥 4달러, 옥수수 2.75달러, 귀리 1.45달러, 수수 2.36달러 (이상 부셸당), 면화 파운드당 72.9센트, 쌀 100파운드당 10.71달러. 생산자들은 기초면적의 85퍼센트까지 수 혜가능. 농가판매가격이 떨어지면 연방의 총부족 분 지급액은 늘어나고, 농가판매가격이 올 라가면 지급액은 줄어듬.	지난 5년간 소맥, 사료곡물, 면화, 쌀 프로 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농민은 1996-20 02년간의 7년 생산자율계약에 참여가능. 보상 기준생산량은 해당작목의 계약면적의 85퍼센트에 기준단수를 곱한 것임. 보전유 보정책이 만기된 면적은 참여가능. 단위당 (예를 들면 부셸당) 지급률은 매년 작목별 총지급상한액을 총지급대상자 기준생산량으 로 나누어 결정. 한 농가에 대한 연간 지 급액은 계약작목별 연간 지급률과 기준생산 량을 곱하고, 이를 모든 작목에 대해서 더 함으로써 계산됨. 이때 총지급상한액에 의 한 제약 적용. 각회계연도별 총 생산자율계약 지급액 상 한선은 미리 결정됨: 1996년 5,570, 1997 년 5,385, 1998년 5,800, 1999년 5,603, 2000년 5,130, 2001년 4,130, 2002년 4,008 (이상 단위는 십억달러). 쌀을 제외 한 작목의 지급상한선은 1996회계연도의 대농민지급액과 1995년 대정부상환액에 따 라 적의 조정. 쌀에 대한 지급액은 1997- 2002회계년도 간 매년 850만달러 씩 증 액. 연도별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비율에 의해 작목별로 배분함: 소맥 26.26%, 옥 수수 46.22%, 수수 5.11%, 보리 2.16%, 귀리 0.15%, 면화 11.63%, 쌀 8.47%.

*미농무부 경제연구청, Agricultural Outlook Supplement, 1996년 4월, pp 7-21을 번역한 자료임.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계약면적(기초면적)과 단수	밀과 사료곡물의 경우, 작물기초면적은 식부면적과 과거 5년간의 경작대상면적의 평균과 같음. 육지면화와 쌀의 경우 기초면적은 1991년과 92년을 제외하고는 과거 3년간의 식부면적과 경작대상면적의 평균을 이용하여 결정됨. 정부지정단수는 1990년도 수준에 동결되거나 장관재량하에 과거 5년간의 (최대단수와 최소단수를 제외한) 이동평균에 기초함.	계약면적에 적합한 농지는 과거의 농업법에 의해 계산된 1996년도의 기초면적에 보전유보정책(CRP)이 해제된 면적을 더하고 보전유보정책에 등록된 면적을 차해준 것임. 농민은 최대 적합면적보다도 적은 면적을 등록할 수 있음. 정부지정단수는 1995년 수준에 동결.
식부자율성과 규제	과일과 채소를 제외한 어떤 작물도 프로그램하의 작물의 기초면적의 25%까지 경작이 허용됨. 이 면적을 신축면적이라 하며 여타 작물을 식부하는 것은 프로그램하의 작물의 경작대상면적으로 인정됨. 신축면적의 15%는 정상신축면적(NFA)이라 불리고 나머지는 선택신축면적(OFA)이라 불림. NFA에서 재배된 작물은 부족분 지불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원래의 작물이 OFA에 재배된 경우에만 부족분 지불됨. 경작면적감축계획(ARP)은 참여 농민의 경지에 어떤 한 작물만 식부하도록 한정함. ARP수준은 부분적으로는 연말재고와 총소비량의 비율에 따라 결정됨. ARP는 각 사료곡물별로 따로 결정될 수 있음. 귀리의 경우 ARP가 5년간 0으로 묶임. 면화와 쌀의 경우 최대 ARP가 각각 25%와 35%임.	과일 및 채소를 제외한 모든 작물은 기초면적의 100%까지 재배가능함. 농지는 반드시 농업용으로 유지되어야 함. 목초재배나 방목, 알팔파나 기타 사료곡물의 식부 및 수확은 무한정 허용됨. 렌즈콩, 녹두, 완두콩을 제외한 채소나 과일을 계약면적에 재배하는 것은 농민이 그것을 과거에 재배한 기록이 없는 한 금지되며 식부시에는 지불액이 식부면적에 따라 감소됨. 과일 및 채소의 이모작은 해당지역에서의 과거 경작기록이 있을 경우 허용됨. ARP의 근거를 없앴.
0/85/92 및 50/85/92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은 경작자로 하여금 허용된 면적의 전부나 일부의 경작을 포기하고 부족분 지불을 받는 것을 허용함. 밀이나 사료곡물의 경우 유지작물을 식부하는 것이 허용됨. 부족분 지불이나 유지작물을 재배하여 용자가격을 받는 것 중 택일하도록 함. 지불률은 최소한 부족분 지불률의 예측치 정도는 됨. 면화와 쌀의 경우 최대 지불면적의 최소한 50%는 경작하여야 함.	0/85/92와 50/85/92프로그램의 조항을 삭제함. 그러나 농산물시장 전환프로그램은 0/100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농민이 농지를 농업용으로 유지하는 한 농지의 어떤 부분도 경작하여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가격지지는 비 상환유자를 통 해 이루어짐. 마케팅론과 유 자부족분 지불 이 용자미상환 으로 인한 정 부재고의 증가 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됨.	농민은 수확물을 담보로 저장하여 명시된 단위당 용자가격으로 용자받음. 밀, 면화, ELS면화, 쌀의 경우 기초 용자가격은 최 대·최소치를 제외한 5년간 농가판매가격 평균 (Olympic평균)의 85%로 결정됨. 기초 용자가격은 전년치의 95%보다 낮아 서는 안되며 쌀의 경우 하한이 정해져 있 음.	마케팅론 조항과 더불어 비상환 용자가 확 대됨. 식부자율프로그램하의 모든 작물은 용자대상임. 밀, 사료곡물, 육지면화의 용자 가격 결정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나 상한이 있음. 가격이 용자가격보다 낮을 경우 원금 과 이자율의 합보다 낮은 수준에서 용자를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마케팅론도 유지됨.
밀과 사료곡물	밀과 옥수수의 최소 기초 용자가격은 Olympic평균의 85%를 넘지않는 선에서 부셸당 2.44달러와 1.76달러임. 장관은 연말재고와 소비량 비율에 따라 용자가격 을 10%까지 삭감할 수 있고 미국 농산물 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재량에 따라 추가로 10% 삭감할 수 있음. 부셸당 원래 의 용자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상환하 도록 하는 마케팅론이 허용됨. 장관은 국 제시세를 미국의 상품질과 지역성에 적용 한 가격에 따라 상환가격을 정할 수 있음.	용자가격은 농가판매가격의 Olympic평균 의 85% 수준에서 결정되나 밀과 옥수수의 경우 각각 부셸당 2.58달러와 1.89달러의 상한선(1995년과 동일) 하에서 결정됨. 재 고와 소비량 비율에 따라 밀과 사료곡물의 용자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장관의 권한 유지 됨. 그 비율이 밀의 경우 15에서 30% 사 이이고 옥수수의 경우 12.5에서 25%사이 이면 용자가격이 5%정도 하락할 수 있음. 만약 비율이 이 보다 높을 경우 10%까지 삭감 가능함. 추가적인 10% 삭감의 재량권 은 주어지지 않음. 수수, 보리, 귀리의 용자 가격은 사료용 옥수수가격과 비교하여 동등 한 선에서 결정됨. 호밀은 더 이상 가격지 지대상이 아님.
면화	육지면화의 기초 용자가격은 현물시장가 격의 Olympic평균의 85%와 북유럽평균 의 90%중 낮은 것에 따라 결정되며 하한 가는 파운드당 50센트임. 부셸당 원래의 용자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상환하도록 하는 마케팅론 제도는 여전히 강제적으로 적용됨. 상환가격은 장관에 의해 국제시세 를 미국의 상품질과 지역성에 적용한 가격 에 따라 결정됨.	육지면화의 기초 용자가격은 파운드당 51.92센트의 상한가와 50센트의 하한가를 가지고 현물시장가격의 Olympic평균의 85%와 북유럽평균의 90%중 낮은 것에 따 라 결정됨. ELS면화의 용자가격은 파운드 당 79.65센트의 상한선하에서 농가판매가 격의 Olympic평균의 85%수준에서 결정 됨. 8개월 용자연장제도 철폐와 같은 제도 개선이 있으나 육지면화의 마케팅론 조항은 잔존.
육지면화이용 자의 유통허가 (marketing certificates) (2단계)	북유럽시장에서의 미국상품의 최저가격의 금요일-목요일 평균가가 북유럽시장가격중 가장 낮은 5개 가격의 금요일-목요일 가격 을 4주연속, 파운드 당 1.25센트이상 상 회하고 세계시장 시세가 육지면화 용자가 격을 130% 이상 상회하지 않을 경우 국 내이용자와 수출업자에게 유통허가를 내어 줌.	다양한 조정절차와 수입할당에 관한 조항 들을 유지함. 2단계를 위한 총지출이 1996-2002회계연도 사이에 701백만달러 를 상회할 수 없음.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쌀	용자가격이 농가판매가격의 5년간 Olympic평균에 의해 결정되며 하한가격은 100파운드당 6.50달러임. 부셸당 원래의 용자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용자상환을 가능케하는 강제적 마케팅론 제도가 계속됨. 상환가격은 국제시세에 따라 장관에 의해 결정됨.	쌀의 용자가격은 100파운드당 6.50달러임. 마케팅론 조항은 잔존.
유지작물 및 두류	두류의 1991-95 유통연도의 최소 용자가격은 부셸당 5.02달러임. 해바라기씨, 카놀라, 평지씨, 잇꽃, 아마인, 겨자씨 및 장관이 지정하는 기타 두류에 대한 새로운 가격지지정책 도입. 유지작물의 1991-95 유통연도의 최소 용자가격은 파운드당 8.9센트임. 1990년의 일괄예산조정법하에서 유지식물 용자는 2%의 수수료를 수반하게 되고 실효 용자율은 부셸당 4.92달러로 하락함. 수수료부과는 후에 철회되고 용자가격은 4.92달러로 묶임.	대두 용자가격은 농가판매가격의 Olympic평균의 85%보다 낮지 않도록 하고 부셸당 4.92달러와 5.26달러 사이에서 결정됨. 해바라기씨, 카놀라, 평지씨, 잇꽃, 아마인, 겨자씨의 용자가격은 파운드당 0.087달러와 0.093달러의 범위안에서 해바라기씨의 농가판매가격의 Olympic평균의 85%보다 낮지 않게 유지.
	부셸당 원래의 유지작물 및 대두 용자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용자상환을 가능케하는 강제적 마케팅론 제도가 시행됨. 상환가격은 유지작물의 국제시세가이거나 혹은 장관에 의해 용자미상환으로 인한 정부재고 축적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됨.	마케팅론 조항 잔존.
용자부족불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자신의 작물을 용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농민은 용자가격과 용자상환가격의 차이에 기초를 둔 용자부족분 지불제도 이용가능.	용자부족분 지불제도는 ELS면화를 제외한 모든 용자대상 작물에 이용가능.
일반조항		
보전수락 (Conservation compliance)	토양침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각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1995년까지 승인된 보전계획을 실행하여야 하며, 또한 습지보전조항을 따라야 함.	계약지불액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침식가능 농지 보전조항과 습지보전조항의 이행을 포함하는 보존계획을 유지해야 함.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지불제한	부족분 지불과 전용보상의 경우 1인당 5만달러까지, 마케팅론, 융자부족분, Findlay 지불의 경우 7만 5천달러까지, 그리고 총계 25만달러까지로 지불한도 정함. 한 개인이 2번째 및 3번째 경영체에서의 지분이 각기 50%를 넘지 않는 한 3개의 독립된 경영체에 대한 지불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 3체법(3-entity rule) 존속. 3체법하에서 개인은 10만달러까지 부족분 지불을 받을 수 있음. 보전유보계획, 양모 및 모헤어, 양봉프로그램은 별도의 지불제한 가짐.	식부자율성과 관련된 지불상한을 1인당 4만달러로 제한. 1개 혹은 그 이상의 작물이나 유지작물의 마케팅론, 융자부족분 상한을 7만 5천달러로 유지. 3체법하에서 개인은 8만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10만달러에서 하락). 1번째 경영체의 상한은 4만달러이고 나머지 경영체는 각각 2만달러의 상한선 가짐. 마케팅론에 관한 상한은 1번째 경영체의 경우 7만 5천달러, 그외 두 경영체의 경우 각각 3만 7천 5백달러로 유지됨.
농민소유비축 (FOR): 밀 이나 사료곡물의 정규CCC 9개월 융자물을 갖고 있는 농민이 융자를 정규기간이상 연장하여 추가로 저장비용 지불받음.	장관은 FOR가입을 다음과 같은 경우 허용할 수 있음. (1) 예상되는 밀의 재고/이용 비율이 37.5% 이상, 옥수수의 경우 22.5% 이상, 혹은 (2) 밀이나 옥수수의 시장가격이 융자가격의 120% 이하. 만약 약 이상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장관은 반드시 FOR가입을 허용하여야 함. 저장보조금 지급은 가격이 목표가격의 95% 수준이 될 경우 중단됨. 가격이 목표가격의 105%에 달하면 이자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2002 곡물연도까지 FOR 중단.
낙농		
가격보조정책은 버터, 무지방분유, 치즈의 정부수매에 의해 이루어짐.	3.67%유지방 우유에 대한 100파운드당 10.10달러의 최소가 설정. CCC구매가 5십억 파운드이상으로 예측될 경우 장관은 연간 지지가를 25-50센트 낮출 수 있으나 100파운드당 10.10달러이하는 안됨. 만약 3.5십억 파운드 이하로 예측될 경우 지지가는 25센트 증가해야 함. 1990년 예산법하에서 생산자 부담세액이 100파운드당 1991년에는 5센트, 1992-95년에는 1.25센트로 정해짐. 전년도기에 비해 우유생산량을 늘이지 않는 생산자는 이 세금을 상환받음.	최저 지지가격은 100파운드당 1996년의 10.35달러에서 1999년의 9.90달러로 하락. 가격지지는 1999년 12월 31일 기해 없어짐. 이전의 법하에서와 같이 장관은 CCC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무지방 분유와 버터의 지지가 사이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음. 낙농업자에 대한 과세는 철회됨. 1996년에 수거된 세금은 연간 유통량이 1995년도분을 상회하지 않는 생산자에게 상환될 것임. 2000년부터, 우유의 100파운드당 9.90달러에 해당되는 융자가격으로 버터, 무지방 분유, 치즈에 대한 비상환융자 실행. 융자프로그램은 낙농제품 저장관리를 돕기 위해 실행.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수입쿼타	1993년의 농업조정법(AAA) 22절에 따라 수입은 쿼타제로 남음. GATT의 UR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쿼타는 판세율쿼타로 전환된 뒤 점차 감소될 것임.	변화 없음.
연방우유유통 규정(Federal milk marketing orders): 우유가 사용되는 상품에 따라 최저가격을 분류하고 결정함.	연방우유 유통 규정하에서 하한가 설정의 기준을 제시해 온 미네소타-위스콘신 가격시리즈를 대체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규정. 장관은 A등급 우유와 유가공품용 우유의 가공업자 구입가를 포함한 가격 시리즈를 위해 새로운 가격설정 방식을 고려하여야 함. 국내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액체우유소비촉진프로그램(Fuild Milk Promotion Program)이 설립됨.	연방우유 유통 규정은 33개 규정에서 10-14개 규정으로 통합됨. 유가설정을 위한 다중기본점(Multiple basing points)이 허용됨. 캘리포니아는 독립된 우유표준을 유지할 수 있음. 액체우유소비촉진 프로그램은 2002년까지 연장. 장관은 다중의 의사가 있을 경우, 뉴잉글랜드지역이 낙농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그 계약은 연방규정의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만료될 것임.
낙농제품수출 유인프로그램 (DEIP): 미국 낙농품의 수출 지원. DEIP하에서 CCC는 경매를 거쳐, 미국 낙농품수출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DEIP계속 허용	DEIP가 2002년까지 연장됨. 장관은 UR-GATT 하에서 가능한 모든 낙농제품을 수출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지원금을 허락하여야 함. DEIP는 시장개발의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음.
땅콩		
가격지지	주로 국내용으로 판매되는 “쿼타” 땅콩의 가격지지는 전년의 용자가격에 5% 이내의 생산비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결정됨. 주로 수출용인 “추가적” 땅콩가격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장관에 의해 결정됨. 용자가격의 1%가 수수료로 징수됨.	땅콩프로그램은 “순손실 프로그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정됨. 쿼타지지가격이 톤당 610달러에 동결되어, 1995년의 678달러에서 감소. “추가적” 땅콩을 위한 용자는 유효. 유통세는 1996년에는 용자가격의 1.15%, 1997-2002년에는 1.2%이며 생산자와 구매자가 나누어 냄.
쿼타	매년 전국의 땅콩쿼타는 식용 및 종자용의 국내소비량과 같게 설정되나 최소한 1.35백만톤은 유지되어야 함. 각 주의 할당량은 1990년 할당비에 따름. 쿼타는 주요 땅콩생산 주의 카운티(county) 내에서만 판매되거나 대여 혹은 이전될 수 있음.	국가전체의 최소쿼타와 미유통분의 이월에 관한 규정 취소. 종자용은 쿼타에서 제외됨. 정부조직체나 타주의 비농민은 쿼타보유할 수 없음. 매년 쿼타는 일정량까지는 동일주내의 카운티 밖으로도 판매, 대여 이전될 수 있음.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설탕 가격지지	사탕수수와 사탕무의 가격지지를 위하여 비상환용자를 통한 가공된 수수와 사탕무 가격지지 계속. 용자가격은 원료 사탕수수의 경우 파운드당 18센트이고 정제된 사탕무의 경우 원료사탕수수의 용자가격에 비례하여 매년 결정되는데 이는 1985년 및 1990년법과 동일. 순손실제거조항 (no-net-cost provisions)은 주로 수입 쿼타에 의존하며 잔존. 용자가격의 1%(사탕무의 경우 1.07%)의 세금이 1992 회계연도부터 부과되며 1995 회계연도에 10% 인상됨.	순손실제거조항과 그와 관련된 수입물의 관세쿼타는 유지됨. USDA는 용자수혜 농민의 상환불능으로 인한 담보몰수에 따른 비용회피를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이용하여야 함. 원료 사탕수수의 파운드당 용자가격은 18센트로 고정. 정제된 사탕무의 용자가격 역시 (변동제 대신에) 1995년 수준인 파운드당 22.9센트에 고정. TRQ가 (원료가치로) 1.5백만톤이하이면 용자는 회수청구됨. 쿼타가 이수준 이상으로 증가되면 용자는 비상환용자가 됨. 사탕수수 가공업자는 담보물이 몰수될 경우 파운드당 \$0.01의 벌금을 정부에 물어야 함. 사탕무 가공업자는 파운드당 \$0.0107의 벌금을 납부함. 가공업자가 부담하는 유통세는 원료사탕수수의 경우 1.1%에서 1.375%로, 원료사탕무의 경우 1.1794%에서 1.47425%로 인상.
시장할당 (Marketing Allotments)	USDA의 한 회계연도의 수입필요량 예측치가 1.25백만톤이하인 경우 국산 설탕에 대한 강제적인 시장할당(공급조절)이 행해짐.	국산 설탕 및 과당에 대한 시장할당 근거 철폐.
관세할당(TRQ): UR-GATT에 의해 수정된 미국의 조화된 관세계획 (Harmonized Tariff Schedule)의 일부임	TRQ는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가격을 CCC용자의 담보물 몰수를 막을 수 있는 정도로 유지. UR-GATT체제하에서, TRQ는 원료 사탕수수의 경우 1.23백만톤보다, 그리고 정제된 설탕의 경우 24,250톤보다 적을 수 없음. TRQ를 상회하는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는 1996년도 원료 사탕수수의 경우 파운드당 17.17센트이고 2000년에 15.36센트로 감소 예정.	변화 없음.
별꿀	용자가격은 파운드당 53.8센트임. 장관은 마케팅론을 실시할 수 있고 용자부족불지불도 가능.	별꿀프로그램의 근거 없앴.
기타 CCC 이자율	CCC용자의 이자율은 CCC가 재무성으로부터 차입시(1년만기 채권) 지불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결정.	CCC이자율은 CCC가 차입시 지불하는 비용보다 1%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상향조정.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항구법 (Permanent Law)	항구법이 존속하고 1938년의 농업조정법(AAA)과 1949년의 농업법은 한시적으로 효력정지.	항구법은 유지되나 한시적으로 효력정지. 몇몇 사용되지 않거나 시대에 맞지않는 법은 폐기됨.
21세기 농업생산위원회	조항없음.	1996년도 FAIR법하에서, 미국의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미국농업생산의 미래와 중앙정부의 적절한 역할 또한 연구할 것임.
선물과 옵션에 관한 시험프로그램	생산자들로 하여금 1993, 94, 95년도 밀과 옥수수의 옵션계약을 구매하는 것을 돕기 위한 옵션 시험프로그램을 의무화. 계약은 지정된 카운티의 합당한 생산자에게 제공됨.	장관은 선물 및 옵션계약이 농산물생산 및 유통에 내재된 가격, 수량, 소득변화에 따른 금융위험으로부터의 합리적인 보호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권한이 있음.
작물보험은 다양한 작물에 대해 이용가능하지만 각 지역별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님. 보험료는 중앙정부에 의해 보조됨.	1994년의 연방작물보험개정법은 작물당 50달러의 처리비용으로 농민이 이용가능한 새로운 재난(CAT)보험표준을 통해 작물보험을 보완함. 농산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거나 FSA(Farm Service Agency)의 융자혜택 혹은 재교섭 CRP계약을 위해서는 농민은 최소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의 CAT보험은 가지고 있어야 함. CAT보험은 민간 보험회사나 FSA사무소로부터 구입가능. 농민은 수수료와 정부보조가 되는 보험료를 내면서 높은 수준의 수량 및 가격보호를 해주는 추가적인 보험을 구입할 수 있음. 추가보험은 민간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구입 가능. 지역별 혹은 개인별 지불유인이 존재할 경우 비보험 작물에 적용되는 비보험자 지원프로그램(Noninsured Assitance Program) 설립. 개정안은 1995년도 작물부터 적용됨.	1996년 봄에 식부된 작물부터(장관재량하에 1996년 가을 식부작물 포함). 농민이 작물손실에 대한 긴급지원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농업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작물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 없음. 1997 작물연도부터 민간 작물보험업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주전체나 부분지역에서 FSA와 민간업자로부터 이중으로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됨.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조수입(revenue)보험시험 프로그램	1994년의 연방작물보험개정법은 생산자의 조수입이 사전에 정해진 액수보다 낮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생산위험방지비용을 제상할 것을 의무화함. 이에 연방작물보험 공사(FDIC)는 선별된 지역에서 1996년 봄에 식부된 몇몇 작물을 대상으로 소득 보호 시험프로그램 실시. 한 민간기업이 1996봄에 수입보호기능을 하는 작물수입 보험상품 도입.	사료곡물, 밀, 두류, 기타곡물 생산자들이 수입손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수입보험의 시험프로그램을 1997-2000 작물연도에 실시.
제II장 농업무역		
미국정부는 주 로 제1장의 양 여판매, 제2, 3 장의 증여나 양 도를 포함하 며, 평화를 위 한 식량이라고 도 불리는 미공 법(P.L) 480 프로그램을 통 해 해외에 식량 원조를 함.	FACT법에 의해 제1장의 신용판매는 농무장관에, 그리고 제2, 3장의 프로그램의 집행은 미국제원조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 권한이 부여됨. 제1장의 용자기간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었고 거치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됨. 제1장의 지원을 배분하는 우선순위는 광역개발의 촉진과 식량안보 및 농업발전을 촉진하는 쪽으로 놓여짐. 식량원조자문그룹의 설치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됨. 제2장에서의 최소 지원량이 매년 증대되어 1995년의 제2장에 따른 총식량증여가 2백2만 5천톤으로 그리고 비상시를 제외한 식량지원이 1백55만톤이 됨. 제3장은 “개발을 위한 식량”이라는 이름을 유지하지만 빈곤과 영양결핍기준으로 볼 때의 최빈국들에게 완전 무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정됨.	새로운 공법 480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 2002년까지 연장. 제1장의 협약을 외국정부뿐 아니라 민간단체와 맺는 것도 인정. 10년의 최소 상환기간조항 철폐와 최대 거치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 등을 포함하는 제1장의 신용부분의 상환조건 수정. 제2장의 국제기구 지원금의 상한선을 13.5백만달러에서 28.0백만달러로 증가. 세계식량프로그램(WFP)과 같은 국제기구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 식량원조자문그룹의 기능을 2002년으로 연장. 제2장의 평상시 프로그램이 정한 해당국 통화로 판매되어야 하는 상품량의 최소한을 10%에서 15%로 증가. 제2장의 최소 지원수준을 1995년 수준에서 2002년까지 연장. 공법480의 적용 대상 농산물을 늘리고 프로그램의 신축성을 높이며 행정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공법480의 제4장(행정조항)을 개선. 공법480의 어떤 한 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의 15%까지는 공법 480의 다른 장의 내용을 수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 함. 제3장 경비의 50%까지는 제2장을 위해 사용 가능.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성장을 위한 식량(Food for Progress)은 1949년 농업법의 416b절에서 처음 인정됨.	성장을 위한 식량 프로그램(FFP)은 가격설정, 유통, 투입물의 이용가능성, 민간 부문의 참여 등의 변화를 통해 농업에 자본주의의 요소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및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와 민간자원단체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85년 농업법의 의해 1995년까지 효력이 인정됨. 이 프로그램하에서 지원되는 농산물은 공법480이나 416b절에 의해 충당됨.	수혜국의 민간농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식량의 관리, 판매, 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FFP의 권한 및 협약을 2002년까지 연장. FFP프로그램에 국제기구 포함. 구소련국가 뿐만 아니라 모든 적합한 국가에 대해 신용판매할 수 있는 권한 확대.
식량안보용 비축(Food Security Commodity Reserve)은 개도국에 있어 인도주의적인 비상식량사태를 대비하여 식량을 저장함.	1980년 농업법에 의해 도입된 식량안보용 밀 비축은 개도국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4백만톤까지의 밀 비축임. 대통령은 국내 밀생산이 매우 적어 밀이 공법 480을 위해 사용될 수 없거나 긴박한 인도주의적 용도가 있는 경우 이 비축량을 사용할 권한을 가짐. 사용된 비축량은 CCC 재고나 이용가능한 기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8개월내에 복구되어야 함.	식량안보용 농산물비축을 위해 1980년의 농업법 개정. 4백만톤까지 비축가능한 농산물로 그 대상이 밀뿐 아니라 옥수수, 수수, 쌀 등으로 확대됨. 재난에 따른 긴박한 인도주의적 용도로의 지출가능 한도를 30만톤에서 50만톤으로 늘이고 전년에 쓸 수 있었으나 사용되지 않았던 농산물이 있는 경우 50만톤까지 추가로 지원 가능. 비축량의 복구를 위해 CCC재고, 생산자로부터의 구매, 시장에서의 구매 등이 이용 가능. 비축량의 복구를 위해 그 다음 회계연도의 CCC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

조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 미농무부가 농산물의 상업적 수출을 촉진하는 수단.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은 1995년까지 승인. 상품신용공사(CCC)는 농산물수출관련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농무장관이 결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금지. 프로그램 수출품중 외국원산 재료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제공 불가	공급자에 대한 단기 신용보증 제공. GSM-103 중기 신용보증 수혜자격을 제시하여 농무장관이 수혜국을 결정하는 데에 활용. 2002년까지 GSM-102 및 GSM-103의 연간 한도액을 55억달러로 설정하고 프로그램간 배분은 신축적으로 운영. 미국산 원료가 중량기준 90% 이상인 고부가가치 농산물에 대해서 신용보증 허용.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GSM-102): 최장 3년간 민간 신용을 보증. 중기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GSM-103): 3-7년간 신용보증		가공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에 대한 신용보증액 비율 의무화: 1996년 및 1997년 25%, 1998년 및 1999년 30%, 이후 35%.
신규시장 프로그램 (Emerging Markets Program)	1991-95 회계연도에 신규 민주국가에 대해서 매년 10억달러의 신용제공 또는 신용보증 자금은 수입농산물의 조작, 마케팅, 가공, 저장, 분배를 위한 시설, 서비스, 미국상품 구매에 사용가능. 1990-95 회계연도에 기술원조를 위해 매년 10백만 달러의 자금을 별도 지원	자금지원을 2002년까지로 연장하고 신규시장을 미국농산물 수입 증가 가능성에 의해 재선정. 1996-2002 회계연도 중 CCC가 최소한 10억달러를 동 목적으로 출연토록 규정하고, 기술원조를 위해 매년 10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
시장접근 프로그램 (Market Access Program): 농산물시장을 개척, 유지, 확장	종전의 목표시장지원 프로그램(Targeted Export Assistance Program)을 시장 접근프로그램(MPP)로 변경. 매년 2억달러 지원.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자금지원의 우선순위 부여. 1993년 예산조정법은 MPP를 1997년까지 연장하고 매년 지원액을 110백만 달러로 감축. 중소기업의 상표부착 수출에 지원 우선순위 부여	MPP를 시장접근 프로그램(MAP)으로 변경. 1996-2002 회계연도 중 매년 90백만 달러지원. 대상은 비영리 농산물교역단체, 지역교역그룹, 민간기업임.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수출증대프로그램 (Export Enhancement Program): 특정 수출시장에서 미국 수출업체가 보조금에 의한 수출과 경쟁하는 것을 지원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EEP는 1995년까지 연장. 매년 지원한도액은 5억달러. UR 협상에 의거 EEP를 2001년까지 연장하되 협정에 의한 보조금 및 물량감축 약속을 이행하고, 프로그램을 시장개척 분야까지 확대	EEP 지원액 한도 설정: 1996년 350, 1997년 250, 1998년 500, 1999년 550, 2000년 579, 2001년 및 2002년 478(이상 단위는 백만달러). 1996-99년도 중 총지원액은 UR 협정 약속보다 16억달러 적음. UR 기준 연도인 1986-90년의 중부가가치 농산물 수출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억 달러 지원.
면실유 및 해바라기 보조프로그램 (Cottonseed and Sunflowerseed Oil Assistance Program):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촉진	면실유 및 해바라기 기름 수출증대를 위해 농무장관이 연간 50백만달러 지원가능. 재원은 1935 농업조정법 32조에 의해 충당	중단
수출금지보상 (Embargo Compensation): 1978 농산물무역법411조에 근거,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으로 특정국 수출을 금지할 때 생산자 피해를 보상	해당없음	향후 미국정부가 특정국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하고 그 90일내에 동참하는 국가가 없을 경우, 농무부는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거나, 개도국에 수출함으로써 생산자에게 보상.
농산물 수출촉진전략	농무장관은 1991년 10월 1일까지 의회에 장기 농산물 수출전략을 제출하고 매년 보완	농무부의 수출목표를 확립한 새 수출정책을 승인. 농무장관은 연방정부의 수출프로그램의 잠재적 효과가 큰 시장을 식별하고 수출업체지원 체계를 확립.
제III장 보전 침식지역토양보전: 보전수단을 실천하지 않는 생산자 지원금지	환경농업(Sodbuster) 프로그램의 지원금지 요건 확대. 5년간 1회의 비고의성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면제. 위반자는 농업지원 프로그램에의 참여 불허	보전준수 요건 지속. 생산자는 효과를 입증할 경우 보전요건 변경 가능.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환경보전 경지유보 프로그램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reage Reserve Program): 환경민감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관된 보전 정책 시행	농업자원보전 프로그램(ARS)내에 환경보전경지유보 프로그램(ECARP), 수질개선장려 프로그램(WQIP), 환경부하경감 프로그램(Environmental Easement Program)을 포함시킴. ECARP는 보전유보 프로그램(CRP)과 습지유보 프로그램(WRP)을 포함. 1995년까지의 목표는 40백만 내지 45백만 에이커로 설정. 환경민감토지, 방목림, 조림한, 한계초지 등은 대상지역이나 초지는 대상에서 제외.	ECARP는 CRP 및 WRP를 지속하고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EQIP)을 새로 포함. EQIP는 토양, 수질 및 관련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교육적, 비용부담적 지원 정책이며 종전의 WQIP, 대평원 보전 프로그램, 환경 부하경감 프로그램을 대체함.
보전유보 프로그램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하에서 생산자는 10~15년간 지급계약을 맺고 총 38백만에이커까지 참여 가능. 토지를 휴경하고 일정한 방법으로 보전하는 댓가로 매년 받는 입차료는 각생산자가 입찰방식으로 제시.	CRP 한도를 36.4백만에이커로 설정. 계약만료된 기초면적은 생산자율계약하의 직접지불 프로그램 참가가능. 농무장관은 계약만료된 면적만큼 새로운 토지를 CRP에 참여시킬 수 있음. 5년 경과후 60일전에 통보하면 계약만료전 취소가능. 단 침식우려가 높거나 환경민감지역은 제외
습지유보 프로그램 (Wetlands Reserve Program)	WRP하에서 최대 975천에이커를 30년 이상 부하경감에 등록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야생동식물 서식 환경제고를 위해 습지를 복원하는 경우 우선권 부여	WRP 동일 한도유지. 1997 회계연도부터 WRP 지역을 3개로 구분: 영구부하경감, 30년 경감, 복구비용 분담.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WQIP 총상한면적은 10백만에이커. 농무부와 협조하여 수질오염을 경감시킬 때 매년 최대 3,500달러를 지급받고 최대 1,500달러를 비용분담 차원에서 지급받음. 야생동물 서식처를 개선한 생산자는 최대 1,500달러까지 추가 비용부담금 수혜. 환경부하경감 프로그램은 환경민감지역에 대해 장기보호책 강구. 비용의 전액까지 보조가능.	EQIP은 경종 및 축산농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7년동안 13억달러 책정. 총지출의 절반은 축산환경개선에 할당. 5~10년 기간 비용분담금 또는 장려금을 공개경쟁지원 및 평가과정을 통해 지급. 농민은 승인된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는 회계연도별 생산자 지급한도는 1만달러이며 장기계약시 총지급액은 5만달러를 초과하지 못함. 대규모 농가는 축산분뇨처리 시설 비용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술지원, 교육 및 장려금은 수혜가능.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보전농가선택계약 (Conservation Farm Option Contract)	규정없음.	생산자율 지급대상 생산자는 토양, 수자원,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CRP, WRP, EQIP 지급금을 통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우선보전지역 (Conservation Priority Areas)	CRP내에 3개의 우선보전지역 지정: 오대호지역, 롱아일랜드 해협지역, 체사피크만 지역.	농무장관은 특별한 환경민감지역을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음.
종합농장경영 프로그램 (Integrated Farm Management Program)	IFMP는 참여자의 기초면적, 기준단수, 지급액을 보호하여 자원보전적 윤작도입을 촉진. 목표는 5년간 3~5백만에이커.	프로그램 중단. 대신 생산자율계약 및 보전농가선택 계약을 실시
자연자원 보전재단 (Nation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Foundation)	규정없음.	NNRCF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비영리 조직에 연구, 교육, 시범사업,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1997-99 기간중 매년 1백만달러 지원.
방목지보전 시범사업 (Grazing Lands Conservation Initiative)	규정없음.	GLCI는 사유방목지의 보전을 위해 기술 및 교육을 위해 매년 2~6천만달러 지원.
수해위험 감축 (Flood Risk Reduction)	규정없음.	생산자율계약 대상지역 중 상습수해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보전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계약지급액의 95%외에 추가지급금 수령가능.
야생동식물 서식처 장려 프로그램 (Wildlife Habitat Incentive Program)	규정없음.	WHIP는 농장의 야생동물 서식 환경개선과 부합하는 자발적 실천을 장려. CRP자금에서 1996-2002년에 5천만달러 지원.
농지보호 프로그램 (Farmland Protection Program)	규정없음.	도시화에 의해 위협받는 농지 17~34만에 이커에 대해 환경부하경감을 위한 자금을 지원 주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비농적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표토를 보호하는데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CCC 자금 상한은 35백만달러.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제Ⅳ장 영양보조 식품카드(Food Stamp) 프로그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가구의 식품구입 보조	규정을 단순화시키고, 프로그램 존속, 식당에서의 식품카드 사용 확대.	2년간 연장시행 규칙위반 식품도소매상에 대한 자격박탈 요건 강화.
상품배급 프로그램 (Commodity distribution program): 빈곤층의 영양 보충	상품보충식품프로그램(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과 여타 식품배급 프로그램을 존속	CSFP, Soup Kitchen, Food Bank 프로그램 등 식품배급 프로그램 존속.
임시비상 식품 원조 프로그램 (Temporary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빈곤층 대상 상품구매 및 배급	연장	연장
제Ⅴ장 농업촉진	대두, 피칸, 버섯, 라임의 연구 및 시장촉진에 대해 재정지원, 관세도 재원에 포함. 시유(市乳)시장 촉진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카놀라, 평지씨, 키위, 옥수수튀김의 연구 및 시장촉진에 대한 생산자 자조금사업 승인. 시유의 촉진사업 연장. 모든 시장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 평가 필요.
제Ⅵ장 융자 농가융자 프로그램 (Farm loan programs): 농무부의 농가 지원청이 농가 행정처 (FmHA)를 대신하여 주관. 융자는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가족적 소농에 중점.	FmHA가 농가재산을 공매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평생에 걸쳐 감가상각액 및 결손처분 상한액을 30만달러로 설정	농가융자 프로그램은 존속하되 자금사용목적에 대한 제한 강화.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농가신용제도 (Farm Credit System): 농지 융자, 농민소유 의 마케팅, 가 공 협동조합에 대한 융자를 담 당.	FCS는 농장생산물의 일부를 가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농산물을 마케팅하는 농가에게 신용을 제공. 융자총액은 지역 은행융자 총액의 15%로 제한.	1996. 2월 제정된 농가신용제도개혁법은 농가신용제도와 연방농업저당회사를 개혁.
제Ⅶ장 농촌개발 농촌개발 프로 그램 (Rural devel- opment prog- rams)	농촌개발처(Rural Development Agency) 를 신설하여 농무부의 농촌개발 업무 총 괄. FmHA의 상하수도 관리, 부락 공동 시설, 사업자금융자업무 등을 이관하여 담 당.	신설된 농촌진흥 프로그램(Rural Commu- nity Advancement Program)은 자금지 원, 융자, 기타 지원을 제공하여 농촌개발목 적 달성. RACP하의 재원은 다음 3분야에 배분: 1) 농촌공동시설, 2) 농촌하부구조, 3) 농촌기업 및 협동조합개발
수자원 및 쓰레 기 처리시설 지 원	수자원 개발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해 5억달러의 기금 승인. FCS 은행과 농촌 전기조합(Rural electric cooperatives) 의 수자원 및 하수도 개발 융자 승인.	수자원 개발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금을 5 억 9천만달러로 확대
통신	농촌학교, 병원이 TV를 통하여 최첨단 정 보를 받을 수 있게 연결.	원격진료 및 영상교육 프로그램의 연장 및 개선. 이를 위해 매년 1억달러의 자금 지 원.
미국농촌기금 (Fund for Rural Ameri- ca)	규정없음.	농업연구 및 농촌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FR A설치. CCC에서 1996 회계연도에 50, 1997년 100, 1998년 150(이상 단위는 백 만달러) 출연.
제Ⅷ장 연구, 지도, 교 육		
기존프로그램	농업연구청, 주협력연구청, 지도청, 기타 연구프로그램의 유지.	연방정부의 1996 및 1997 회계연도에 대 한 농업연구, 지도, 교육사업 승인. 1998- 2002년간 재원 한도내에서 일반적 사업승 인.

조 항	1990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0-1995)	1996 농업법의 주요 내용 (1996-2002)
농업연구, 지도, 교육, 경제 자문위원회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Extension, Education, and Economics Advisory Board)	사용자 자문위원회(Users Advisory Board)업무에 연구자금의 배분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자문 기능 추가.	농무부에 대한 연구우선순위 설정 및 정책 자문을 위하여 NAREEEAB설치. 기존의 3종류 자문위원회는 해체.
농업연구시설 점검을 위한 전략	농무장관은 연방자금을 사용하고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농업관련 연구기구를 점검하기 위한 농업연구시설 기획 청산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	연방재정지원을 받는 농업연구기구의 발전 및 통폐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반 설치
제IX장 농산물 검역검사	농무장관은 미국내에 수입되는 동식물검역 검사와 관련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검사료 징수 가능.	추가재원없이 수입농산물을 검역검사하기 위하여 1억달러 이상의 검사료를 징수할 수 있음.
쇠고기 및 가금 육 안전검사단	규정없음.	안전검사단 소속 과학자들이 검사정책 및 과정, 그에 관한 변경제안 등을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연방 쇠고기 검사법을 수정.